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5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2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2
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공제액 상향(최수진 의원안)	5
다.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 (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	8
라.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최수진의원안)	12

I. 개요

1.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5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23.
- (3) 회 부 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현행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개요]

고용 관련 기존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동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본공제에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공제되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4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대기업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기본공제 중 우대공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원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됨.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우대공제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어 경력단절자의 범위에 남성이 포함되었고, 경력단절 사유에 가족돌봄이 추가되었음.

기본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지원되며,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이 추징됨.

또한, 정규직전환자(2024년 말까지)와 육아휴직복귀자(2025년 말까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전환일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됨.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2년 2조 9,574억원, 2023년 3조 5,903억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4조 20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10,761	13,524	15,932	16,981
법인세	18,814	22,379	22,180	23,227
합계	29,574	35,903	38,112	40,208

주 1)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공제액 상향(최수진 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우대공제 대상 공제액 상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935</td><td>1,093</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935	1,093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935	1,093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현행 연 850만원에서 935만원으로 10% 상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연 950만원에서 1,093만원으로 약 15% 상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대하여 더 높은 공제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수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총 4조 208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혜자 귀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감면액 3조 5,903억원 중 3조 1,555억원(87.9%)이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액 확대 시 세수감 규모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10,761	13,524	15,932	16,981
법인세	18,814	22,379	22,180	23,227
합계	29,574	35,903	38,112	40,208

주 1)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자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법인				구분 곤란	합계
중소	중견	상출	기타		
31,555 (87.9)	2,573 (7.2)	587 (1.6)	1,189 (3.3)		35,903

자료: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다.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 (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u>개정안별 공제율 상이</u>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 <u>2025. 12. 31.</u>					○ 적용기한 - <u>2028. 12. 31.(최수진의원안)</u> - <u>2030. 12. 31.(정일영의원안)</u> ○ 시행일 - 2026. 1. 1.(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 정일영의원안 2025. 1. 22. 발의(의안번호 7695),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최수진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며,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하게 고용증가인원당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평가되었음.¹⁾ 특히, 중소기업에서 비교적 뚜렷한 고용증대효과가 관찰되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총 4조 208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 9.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10,761	13,524	15,932	16,981
법인세	18,814	22,379	22,180	23,227
합계	29,574	35,903	38,112	40,208

주 1)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둘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청년 등 채용 지원 사업 현황]

지원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025년도 예산: 10만명 지원분(7,772억원 편성)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5년도 예산: 75.6만명 지원분(3,774억원 편성)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2025년도 예산: 357억원 편성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장려금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최대 24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지급(80만원) - 2025년도 예산: 정규채용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추가지급(80만원)

셋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효과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에 따른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라.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최수진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추가공제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중소</th><th>중견</th></tr><tr><td>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td><td rowspan="2">1,300</td><td rowspan="2">900</td></tr><tr><td>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td></tr></table>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정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024. 12. 31. 육아휴직 복귀자: <u>2025. 12. 31.</u>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 추가공제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 복귀자: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시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또는 900만원(중견기업)을 세액공제하는 추가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제도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대상자에게 지급한 1년치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고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음.

이후 본 조세특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항목으로 재편성되면서 현행법과 같이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의 세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음.

또한, 개편 전까지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했던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복직 후 근무기간이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1년간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4년 들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21	1.24	1.17	1.05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또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미상	15.7	15.8	13.4	14.3	13.1	16.5	14.2	17.6	13.8
4명 이하	10.8	10.4	10.7	10.1	11.3	11.8	11.8	17.1	18.8
5~49명	13.4	13.8	15.0	15.8	17.8	19.6	21.1	26.4	29.7
50~299명	13.9	14.8	17.0	18.6	20.9	22.8	24.8	29.9	32.3
300명 이상	25.0	26.2	28.0	29.6	30.5	31.7	32.9	36.2	37.4
계	19.1	20.0	21.6	22.5	24.0	25.5	27.0	31.2	32.9

주: 각 연도별 출생아 부모 중 해당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육아휴직대상자로 나누어 100분율로 표시, 육아휴직대상자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남성 87.6%, 여성 89.1%)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등이 제시되었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별 동의 비율]

(단위: %)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되어	89.1	87.4	90.9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에	87.4	84.7	90.2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때문	84.6	84.4	84.8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봐	80.9	79.2	82.6
경력유지, 커리어개발 등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79.1	72.2	86.4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66.0	62.9	69.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허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²⁾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만원에서 최대 87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정부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³⁾의 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금융업 등: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5. (생략)

3)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

원금이 지급됨.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이 지원됨.

문 의 처
02)6788-5154